주요변경사항

세부사업명 (변경사유)	2022년 안내	2023년 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명확히 함)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3) 시·군·구 (추가)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3)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해야하며,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 결과 보고 등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해야하며,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 결과 보고 등
(4개 전염병 외 다른 전염병 확인. *옴, 결핵, C형간염, CRE, VRE, A형간염, 사면발이증)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 (생략) • (생략) • 시설에서 전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 (생략) • (생략) • 시설에서 전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제목과 상이)	3. 옴 관리 수칙 • 발생시 조치 사항 부록「2018년도 옴 예방 및 관리지침」안내서준수	3. 옴 관리 수칙 • 발생시 조치 사항 부록「2018년 옴 예방 및 관리안내서」준수
2-6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반영)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내용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2.27%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내용 사.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대비 0.9082%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 1. 장기요양기관 개요**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Ⅰ- 1. 장기요양기관 개요**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기준 (법상 용어 및 문구로 수정)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이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자료 요청 시 공단 제공자료 변경 안내)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처리 절차(행정사항) 나. 업무 절차(처리기한 30일 이내) 서류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자료" 활용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고려 • (생략) • (생략) • 지정 심사 자료 요청(→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 - 급여제공 이력, 현지조사 이력, 평가 이력,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 등 건강보험공단이 제공 가능한 심사 자료 문서 회신 요청(공문 발송)• * 지정 심사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명·법인등록 번호 등을 공문에 명시하여 회신 요청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행복e음 '행정처분 전국조회'에서 조회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처리 절차(행정사항) 나. 업무 절차(처리기한 30일 이내) 서류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자료" 활용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고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정 심사 자료 요청(→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 - 평가 이력(대표자), 현지조사 이력(대표자, 법인) 등 건강보험공단이 제공 가능한 지정심사 기초 자료 문서 회신 요청(공문 발송)• * 지정 심사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명·법인등록 번호 등을 공문에 명시하여 회신 요청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행복e음 '행정처분 전국조회'에서 조회
(차세대 시스템 개통에 따른 기능개선 부분 반영)	마.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 지정등록 관련 업무 ※장기요양기관 지정등록 시설 전산 입력항목 ① 민원등록 화면 신설 : 신청서류 접수시 먼저 민원으로 입력해야 함 ※사통망 4단계로 전산업무 처리(민원조회→신청서등록→ 현장확인내역 입력→지정서 출력) ② 재가서비스유형별로 급여제공(호업) 시작·종료일을 각각 입력관리 ※새홀시스템에서는 기관기호별 서비스 변경처리 일자만 관리 ③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새홀시스템 화면을 불러와 입력 ④ 인력현황 직종유형에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직원(코드 21)」추가 ⑤ 시설현황에 「요양보호사실」추가, 용어변경(거실→생활실, 작업 및 일상 동작훈련실→물리(작업)치료실) ⑥ 근무형태 종류에서 '계약직'삭제 ※ 공단 장기요양센터와 자료 전산연계로 업무편의 제고 •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산 조회 가능 • 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시·군·구의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관리내역을 전산조회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등록 등의 입력 및 관리화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매뉴얼」참조	마.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 지정등록 관련 업무 ※장기요양기관 지정등록 시설 전산 입력항목 ① 민원등록 화면 신설 : 신청서류 접수시 먼저 민원으로 입력해야 함 ※사통망 4단계로 전산업무 처리(민원조회→신청서등록→ 현장확인내역 입력→지정서 출력) ② 재가서비스유형별로 급여제공(호업) 시작·종료일을 각각 입력관리 ※새홀시스템에서는 기관기호별 서비스 변경처리 일자만 관리 ③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관관리 감독 메뉴에서 조회 및 입력 ④ 인력현황 직종유형에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직원(코드 21)」추가 ⑤ 시설현황에 「요양보호사실」추가, 용어변경(거실→생활실, 작업 및 일상 동작훈련실→물리(작업)치료실) ⑥ 근무형태 종류에서 '계약직'삭제 ※ 공단 장기요양센터와 자료 전산연계로 업무편의 제고 •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산 조회 가능 • 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시·군·구의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관리내역을 전산조회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등록 등의 입력 및 관리화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자매뉴얼」참조
(의료법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table>
<tr>
<td>제25조 및
제66조
관련사항 반영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2634
('22.12.13.)
관련))</td>
<td>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심사하지 않을 계획
• (신설)
3.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나) 인력배치기준
<table><tr><td colspan="2">직종별
시설별</td><td>요양보호사</td></tr><tr><td rowspan="2">노인요양시설</td><td>입소자 30명 이상</td><td>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td></tr><tr><td>입소자 30명 미만
10명 미만</td><td>입소자 2.5명당 1명</td></tr><tr><td>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td><td colspan="2">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td></tr></table>※인력기준(•) 상세요건
1~8. (생략)
9.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2.5 = 6.8를 반올림하면 7→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2.5 = 6.4를 반올림하면 6→6명 배치
10~11. (생략)
13. (신설)</td>
<td>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80.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 시, '면허신고증'('의료법」 제25조)
3.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나) 인력배치기준
<table><tr><td colspan="2">직종별
시설별</td><td>요양보호사</td></tr><tr><td rowspan="2">노인요양시설</td><td>입소자 30명 이상</td><td>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td></tr><tr><td>입소자 30명 미만
10명 미만</td><td>입소자 2.5명당 1명</td></tr><tr><td>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td><td colspan="2">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td></tr></table>※인력기준(•) 상세요건
1~8. (현행과 같음)
9.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3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2.3 = 6.8를 반올림하면 7→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2.3 = 6.4를 반올림하면 6→6명 배치
10~11. (현행과 같음)
13. 세탁물을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음.</td>
</tr>
<tr>
<td>(법상 용어로 수정)</td>
<td>Ⅰ-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td>
<td>Ⅰ-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td>
</tr>
</table>

<table>
<tr>
<td></td>
<td>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생략)
- 또한,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생략)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가 되어야하며, 고용된 관리책임자는 인력현황에 기재</td>
<td>나. 설치신고 개요
•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현행과 같음)
- 또한,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설치할 때 기관의 근로자는 대표자(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대표자(설치·운영자)가되어야 하며,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td>
</tr>
<tr>
<td>(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019.3.6.) 사항 반영)</td>
<td>• 인력기준
※(생략)
※(생략)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td>
<td>• 인력기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제외)를 설치하여야 함</td>
</tr>
<tr>
<td>(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019.3.6.) 사항 반영)</td>
<td>[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시설기준
※(생략)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td>
<td>[단기보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침실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제외)를 설치하여야 함</td>
</tr>
<tr>
<td>(규정 적용 기준 명확화)</td>
<td>다) 병용, 겸직규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병설'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겸직규정
(표 생략)
※(신설)</td>
<td>다) 병용, 겸직규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병설'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설립구분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겸직규정
(표 현행과 같음)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단기보호시설을 병설운영하는 경우, 낙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설 내 요양보호사 간 일시적 돌봄 보조가능</td>
</tr>
<tr>
<td>(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관련 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634
('22.12.13.)</td>
<td>2.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td>
<td>2.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지정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td>
</tr>
</table>

<table>
<tr>
<td>관련))</td>
<td>
<table>
<tr><th>서비스</th><th>서비스</th></tr>
<tr><td>공통</td><td>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신설)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td></tr>
</table>
</td>
<td>
<table>
<tr><th>서비스</th><th>서비스</th></tr>
<tr><td>공통</td><td>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 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td></tr>
</table>
</td>
</tr>
<tr>
<td></td>
<td>4.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1.9월 기준)

다. 복지용구 제품: 597개 제품('21.9월 기준)</td>
<td>4. 복지용구 급여 현황
가. 복지용구 급여품목('2.12월 기준)

다. 복지용구 제품: 615개 제품('22.12월 기준)</td>
</tr>
<tr>
<td>(차세대 시스템 개통에 따른 기능개선 부분 반영)</td>
<td>Ⅱ. 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행정처분 등
3.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절차
•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신설)

- (생략)
-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청
- 신청절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로 접속하여 시스템 사용 등록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및 동영상 참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td>
<td>Ⅱ. 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행정처분 등
3.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절차
•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일체 전환되기 전까지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
- (현행과 같음)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시·군·구 신청
- 신청절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로 접속하여 시스템 사용 등록
※상세 내용은 시스템 상 매뉴얼 및 동영상 참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문의</td>
</tr>
</table>

<table>
<tr>
<td></td>
<td>라. 변경기준
<table>
<tr><th>구분</th><th>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h>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r>
<tr><td>기관설립 주체변경</td><td>-</td><td>지정취소 후 신규지정</td></tr>
<tr><td rowspan="2">대표자 변경</td><td>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td><td>변경신고로 처리
※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td></tr>
<tr><td colspan="2">• 지자체 설치·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위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로 처리</td></tr>
<tr><td>법인등록 번호변경</td><td>-</td><td>지정취소 후 신규지정</td></tr>
<tr><td>(이하 생략)</td><td colspan="2">(이하 생략)</td></tr>
</table>
</td>
<td>라. 변경기준
<table>
<tr><th>구분</th><th>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h>법인운영 장기요양기관</th></tr>
<tr><td>기관설립 주체변경</td><td>-</td><td>폐업 후 신규설치·지정
※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 법인에서 타 법인 등 기관설립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td></tr>
<tr><td rowspan="2">대표자 변경</td><td>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설치·지정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td><td>변경신고로 처리
※ 지정요건 만족여부 확인</td></tr>
<tr><td colspan="2">• 지자체 설치·운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위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로 처리</td></tr>
<tr><td>법인등록 번호변경</td><td>-</td><td>폐업 후 신규설치·지정</td></tr>
<tr><td>(이하 생략)</td><td colspan="2">(이하 생략)</td></tr>
</table>
</td>
</tr>
<tr>
<td>(행안부 민원간소화 권고)</td>
<td>Ⅱ-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3. 신고절차
가. 신고자
• 신고서류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사본
※ (신설)</td>
<td>Ⅱ-2.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3. 신고절차
가. 신고자
• 신고서류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사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td>
</tr>
<tr>
<td>('23년도 인건비 지출비율로 반영)</td>
<td>12. 인건비 지출 관리
가. 인건비 지출
<table>
<tr><th>구분</th><th>장기요양요원</th><th>인건비 지출비율(%)</th></tr>
<tr><td>노인요양시설</td><td rowspan="2">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td><td>61.1</td></tr>
<tr><td>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65.5</td></tr>
<tr><td>주야간보호</td><td rowspan="2">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48.7</td></tr>
<tr><td>단기보호</td><td>59.0</td></tr>
<tr><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td><td>86.6</td></tr>
<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td><td>49.8</td></tr>
<tr><td>방문간호</td><td>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td><td>60.4</td></tr>
</table>
※인건비 지출비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td>
<td>12. 인건비 지출 관리
가. 인건비 지출
<table>
<tr><th>구분</th><th>장기요양요원</th><th>인건비 지출비율(%)</th></tr>
<tr><td>노인요양시설</td><td rowspan="2">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td><td>61.4</td></tr>
<tr><td>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td><td>65.8</td></tr>
<tr><td>주야간보호</td><td rowspan="2">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td><td>49.0</td></tr>
<tr><td>단기보호</td><td>59.3</td></tr>
<tr><td>방문요양</td><td>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td><td>86.6</td></tr>
<tr><td>방문목욕</td><td>요양보호사</td><td>50.1</td></tr>
<tr><td>방문간호</td><td>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td><td>60.9</td></tr>
</table>
※인건비 지출비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td>
</tr>
</table>